

비과세종합저축 특약 개정 전·후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제1조(약관의 적용) (생 략) 제2조(가입대상자)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 한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1.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2. ~ 6. (생 략) 제3조(대상 예금 등) ~ 제16조(과세특례 부적격 판정 통보 및 의견제시) (생 략) 부칙 1 ~ 3 (생 략) (신 설)	제1조(약관의 적용) (좌 동) 제2조(가입대상자)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1. 만 65세 이상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 급자 2. ~ 6. (좌 동) 제3조(대상 예금 등) ~ 제16조(과세특례 부적격 판정 통보 및 의견제시) (좌 동) 부 칙 1 ~ 3 (좌 동) (신 설) 4. 이 개정 특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	• 법률 조번호 수정 •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